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6호

2020. 5. 18.

건 명	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참여예산실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,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대행(안 제11조, 제 13조)

○ 주민자치회 기구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종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협의회로 대행(안 제15조)

○ 주민자치회 기구 확대에 따라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종전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 등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·집약 등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□ 검토의견

○ 종전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주민자치회의 기구로 대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7호

2020. 5. 18.

건 명	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(참여예산실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논산시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표지판 설치 적용범위(안 제3조)

다.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(안 제5조)

라. 공사·시설·운영·장비표지판의 설치(안 제6조~제9조)

마.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(안 제10조)

바. 비용부담(안 제11조)

사. 관리감독 및 평가(안 제12조)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보조금지원 시설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2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9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,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